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21-09-16

## 대 구 지 방 법 원

### 제 4 - 3 민 사 부

#### 판 결

사 건	2021나304715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현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한별 담당변호사 강민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상욱
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1. 1. 29. 선고 2019가단132107 판결
변 론 종 결	2021. 6. 30.
판 결 선 고	2021. 7.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5,377,620원과 이에 대한 2017. 12. 2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플라스틱 칩, 마스터배치(원료 고무에 배합제를 혼합하는 공정에서 배합제를 미리 처방보다 높은 농도로 섞어 반죽한 것으로 고무에 혼입하여 각 배합제의 계량을 정확하게 할 수 있고, 분산을 좋게 하며, 작업 중의 흘날림도 방지할 수 있다. 플라스틱의 성형가공 시 안료의 분산을 좋게 하는데 사용된다) 등을 제조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고무 약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① 원고는 2016. 9.경 피고로부터 C 주식회사가 생산한 안료(모델명 : D, 이하 '이 사건 안료'라 한다)를 매수하여 위 안료를 이용하여 마스터배치를 제작한 후,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 납품하였고, ② E은 위 마스터배치를 이용하여 수지와 혼합하여 타포린(일명 '천막지') 원단에 색깔을 코팅한 후 'F회사'에 납품하였으며, ③ F회사는 위 원단을 이용하여 완제품인 김장매트(이하 '이 사건 김장매트'라 한다)를 만들어 홈쇼핑 등에 납품하였다.

다. 2016. 11.경 이 사건 김장매트 안쪽에서 오렌지 색이 묻어나는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12. E에 원단불량 및 완제품 가공불량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22,877,62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2017. 12. 18.까지 E에 위 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섭씨 170도로 마스터배치를 생산하는 작업을 하고, E은 약 섭씨 300도로 천막지에 안료를 착색하는 작업을 한다. 이에 이 사건 김장매트 생산을 위한 안료는 내열온도가 섭씨 300도이어야 한다.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은 작업을 위해 안료를 사용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내열온도 섭씨 300도인 타포린용 안료를 공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페인트용, 도료용 안료로써 내열온도 섭씨 210도인 이 사건 안료를 공급하여 채무의 불완전이행을 하였다.

이 사건 안료의 하자 및 피고의 채무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① 위 E 손해배상금 22,877,62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② 이 사건 안료를 이용하여 생산한 마스터배치 3,500kg 1,750만 원 상당을 납품하지 못하여 위 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③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안료의 하자로 인하여 회사의 신뢰 및 이미지 훼손, 상실로 인한 거래 단절, 감소, 매출감소 등으로 적어도 500만 원의 손해를 입었고, 이러한 사정은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 45,377,6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안료의 성질로 이 사건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안료 자체의 문제, 즉 내열온도가 210도에 불과하여 타포린 제작용으로는 공급되어서는 안되는 안료임에도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공급한 것이 불완전이행이라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하자가 발생한 타포린이 만들어지기까지 원고에 의한 마스터배치 제작 과정, 타포린 제작 과정 등을 거치게 되는



데, 이 사건 하자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마스터배치나 타포린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문제가 아닌 점 또는 이 사건 안료로 마스터배치를 제작하여 이를 타포린 제작에 쓸 경우 반드시 이 사건 하자과 같은 유형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 입증되어야만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원고가 제출한 갑 제8호증의 1, 2(마이그레이션 테스트결과 통보)는 'D(POWDER), D(M/B)'의 경우 마이그레이션 현상이 발생하고 타포린의 경우 마이그레이션 현상이 발생한 불량품'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 테스트를 진행한 조건, 방법, 테스트 시행자 등의 신뢰성이 담보될 만한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시험 대상이 된 안료가 이 사건 안료와 동일한 것인지도 객관적으로 담보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외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안료 자체의 문제로 인하여 이 사건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설령, 이 사건 안료의 물성으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이 사건 하자가 발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아래에서 볼 관련 법리와 앞서 본 기초사실과 각 증거, 갑 제12호증,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 H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안료를 공급한 행위가 불완전이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원칙적으로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결여한 경우를 하자로 보며(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20190호),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이나 성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상황이나 작업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를 하자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제품이 사용될 작업환경이나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 환경이나 상황에 필요한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는



제품의 공급을 요구한 데 대하여 매도인이 그러한 품질과 성능을 갖춘 제품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보증하고 공급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만 한다(대법원 2001. 1. 18. 선고 98다18506호,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17834호 등)

② 피고가 원고로부터 무독성 안료<sup>1)</sup> 추천 의뢰를 받고 이 사건 안료를 추천하였고, C 주식회사가 이 사건 안료에 관하여 제공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안료의 내열온도가 섭씨 210도인 사실이 인정된다.

③ 피고와 원고의 실무 담당자 사이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수금 채무 변제 이후에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하는 물품의 단가를 조절하여 이 사건 하자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보전하는 방안에 관하여 논의하자는 취지의 대화가 있었는데, 이는 당시 거래 관계에 있던 원고와 피고의 각 실무 담당자 간에 위와 같은 방안을 의논하는 정도였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가 이 사건 안료의 하자나 피고의 귀책 사유를 인정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④ 원고는 피고와 장기간 거래해 왔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가 안료를 이용하여 마스터배치를 제작하는 사실과 이를 이용하여 타포린을 제작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내열온도가 섭씨 300도에 이르지 않는 안료를 공급하여서는 안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상황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안료의 매매시에 원고가 피고에게 내열온도 조건 등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밝힌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가 그간의 거래 경험에 의하여 스스로 내열온도 조건을 안료의 조건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더더욱 어렵다.

⑤ 더군다나 이 사건 안료는 원고의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취급하는 안료여서 이것

---

1) 원고가 최종적으로 제작하고자 한 물품이 김장 매트용 천막지여서 이에 사용되는 안료의 조건으로서 '무독성'은 가장 중요한 조건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마스터배치, 타포린 제작에 적합한지는 원고가 이를 검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그러한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제1심 증인 H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원고 측으로부터 무독성 안료를 추천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H이 최초로 추천한 안료는 단가가 비싸다는 이유로 원고측이 거부하였고 H이 무독성 안료로서는 저렴한 편인 이 사건 안료를 제안하면서도 내열성이 높지 않은 점을 언급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⑥ 무엇보다도 이 사건 안료의 내열온도는 특별한 검사가 없이도 이 사건 안료에 대한 정보(MSDS(을 제2호증의 1), TDS(을 제2호증의 2))를 통하여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원고의 주장처럼 피고가 이 사건 안료의 내열온도에 대한 정보만을 가지고 이를 원고에게 공급하여서는 안된다는 판단을 하였어야 한다면 이는 원고에게도 마찬가지로 원고도 쉽게 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스스로 이 사건 안료가 원고가 목적하는 바에 부합하지 않는 안료라는 점을 쉽게 알았어야 한다). 나아가 이 사건 안료가 마스터배치 제작 등 가공 과정에서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고 물성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원고의 영역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안료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하자가 발생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안료 공급의무를 불완전이행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21-09-16

재판장      판사      서범준

            판사      박치봉

            판사      서영애